

기안용지

문서번호	건번호 30050-111	전화번호 : 731-6373	시행규칙	
보통기간	영구·한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통기간		2425		
시행일자	90.9	결재		
보조 시정	<i>[Handwritten Signature]</i>	협조 기관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본 시 장 장	
도 로 국 장	<i>[Handwritten Signature]</i>		검 인	
건설행정국장	<i>[Handwritten Signature]</i>		1990. 9. 29	
기안책임자	시정관리계장 김홍식 <i>[Handwritten Signature]</i>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의	시 장	
계 목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결정 및 입법예고			

(제 1 안) 내 부 결 제

1. 내무부 지역 30500-7899(90.9.11)호 *[Handwritten Stamp]* 결정내역
계정정보와 관련입니다.
2. 공공시설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물을 설치 사용하므로써 도로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자에게 행정질서법토서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별첨과 같이 제정시행토자 하는바, 본 조례(안)의 확정예 앞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입법예고)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여 본조례(안) 마련예 반영토려 합니다.

원안대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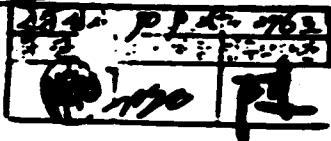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90.9. ^{10.5} -90.10.2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보 게재공고	
다. 공고내용 ; 별첨	
첨부 ; 1. 공고(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1부	
3. 내무부 조례 준칙 1부 끝.	
(제 2 안) <i>PS2</i>	
수신 공보관	발신 도로국장
제목 공고문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문안 ; 공고안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보게재	
다. 게재일자 ; 90.9. ^{10.5}	
첨부 ; 공고안 1부 끝.	90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제1안과 같은건	

제목 제1안과 같은건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42호 (90.10.5)와 관련임.</p>	
<p>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미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안 및 서울특별시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약(안)을 송부하니 관련의견을 90.10.31 까지 회신하기 바람.</p>	
<p>첨부 ; 1. 공고안 1부</p>	
<p>2. 서울특별시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약(안) 1부 곱.</p>	
<p>수신처 ; 서구 (1-22,건설관리과장), 행정과장, 세정과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시설과장, 주차계획담당관, 가로정비추진반장</p>	
<p>(제 4 안) P 2</p>	
수신 법무담당관	발신 건설행정과장
<p>제목 입법예고안 사본 송부</p>	
<p>1. 서울특별시 공고제 42호 (90.10.5)와 관련입니다.</p>	
<p>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미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입법 예고안 사본을 송부합니다.</p>	
<p>첨부 ; 1. 공고안 1부</p>	
<p>2. 서울특별시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약(안) 1부 곱.</p>	
<p>91</p>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1990.10.28

1990. 10. 28
 시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443 호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리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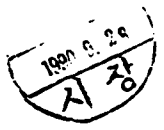
1990. 10.

서울특별시장

- 1. 조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2. 제정의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엄정한 도로질서 확립
- 3.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대상 >

-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행위
-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과매도 부과기준 > - 20만원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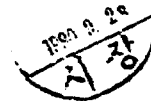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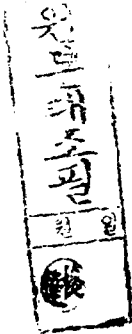
무단 점유 면적	과 매 료
3㎡미만	50,000원
3㎡ - 7㎡미만	100,000원
7㎡ - 10㎡미만	150,000원
10㎡ 이상	200,000원

4. 의견제출 ; 이조매(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6절차^중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참조 ;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조매(안)의 전문등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731-6373)
 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과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동법 제10조에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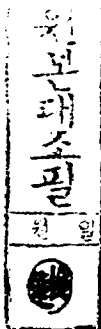
제3조 (과태료)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1986. 8. 28
시장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과태료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과태료의 산정)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 (부과징수)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 통지서를 발부 함으로써 행한다.

② 과태료는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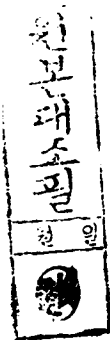
④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표

무 단 점 용 면 적	과 태 료
3m ² 미만	50,000원
3m ² 이상 - 7m ² 미만	100,000원
7m ² " - 10m ² "	150,000원
10m ² 이상	200,000원



면적(3.41평)

특별로남입고지서
영남지방공정서

계	로	19	년도	일반회계
(관)세외수입		(항)임시적세외수입		
(세항)잡수입		(목)과매료		
남부공역	위반장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주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상 명	기타			

남부공역 : 입금 원정
(M)

위반행위 :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7조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남부기간 : 19 년 월 일

남부주소 : 서울특별시 공공 수납대행청
19 년 월 일
구 청 장

남부지방공정서

계	로	19	년도	일반회계
(관)세외수입		(항)임시적세외수입		
(세항)잡수입		(목)과매료		
남부공역	위반장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주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상 명	기타			

남부공역 : 입금 원정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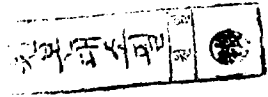
위반행위 :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7조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공공수납대행청 (인)
서울특별시세입징수권기여

영 수 공

계	로	19	년도	일반회계
(관)세외수입		(항)임시적세외수입		
(세항)잡수입		(목)과매료		
남부공역	위반장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주소	구 동 로 가 번지 호		
상 명	기타			

남부공역 : 입금 원정
(M)

위반행위 :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7조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공공수납대행청



地方自治法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②前款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을 통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을 통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하는 規定을 條例로 定할 수 있다. ✓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依한다.

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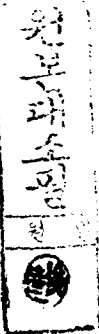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보하여야 한다.

⑤異議를 申請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4項의 期間내에 決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또는 그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有關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5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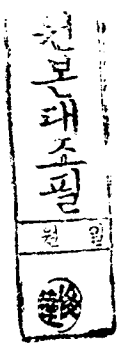
의



서울특별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정(안)

○ **제정사유**

- 도로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도로법 제80조의 2), 또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82조)
- 도로무단점용은 사례가 많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만 부과하고 있는바
- 부당이득금 액수가 적고 부당이득금 납부를 행위자들이 도로점용허가로 오인하여 도로무단점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거나 축소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 도로무단 점용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것 보다는 더 큰 부담을 주어 신규무단점용을 근절시키고 점차 그 사례를 축소시키는데 있음.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내 부 부

지역 30500 - 78PP

(731 - 2250)

1990.9.11.

수신 서울특별시청

(영구)

참조 도로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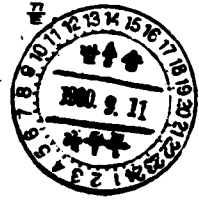
제목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 계정통보

1. 당부에서는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연속되는 악성 고질적인 행위를 완전제거하기 위해서는 연행도로법상 부당이득금 징수나 형사 벌인 벌칙금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행정발토서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계정하고저

2. 별첨과 같이 조례준칙을 계정 직할시와 도에 시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첨부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준칙 1부. 끝



내 부 부 장



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준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 2조 및 제 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33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과태료)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 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辯護士 郭倉旭 法律事務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길 20-1 (충무로) 2층
TEL : 02-770-8958, 8961 FAX : 02-770-8954, 8957
2014 TEL : 02-770-8954, 8957 FAX : 02-770-8954

주 소: 서울특별시 199 0. 7.

주 소: 법무담당관, 건설행정과장


주 소: 法律意見書

귀하께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과징조례 제정에
따른 자문을 하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1.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및 무
단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부과장수행정처분을 행
할수 있는 규정(82조, 80조의 2)이 있어 과태료 이상의 형사계제
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질서법이할수 있는 과태료계제 규정이나
동 계제를 조약에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모범으로 하여 조약로서 과태료과징근
거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과징조약안 검토 수정안:

- 가) 제2조 2항: 도로 무단점용이하 함은 제3조 제1항 소정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제3조 1항 본문: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서 무단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부과 이후에도 그 행위가 계속 될
때에는 1일 단위로 행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위 과태료를 부과 징수

원본
폐쇄
필
원
일


辯護士 郭倉旭 法律事務所

受 信 :
 日 付 :
 送 付 先 : 2010년 1월 15일

할 수 있다.

1항 4호: 기차 도로상에서 일반의 교통의 장애하는 행위를 하 자

43항: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
 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제4조: 이조백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매
 당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 장	<i>[Handwritten Signature]</i>
<i>Ushel</i>	과 장	<i>[Handwritten Signature]</i>
	계 장	<i>[Handwritten Signature]</i>

법률 자문 의뢰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박창욱 변호사 귀하

776-5959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1990. 7. 12.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1. 의뢰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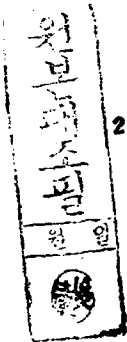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제정에 따른 자문

2. 인건보고자

소 속 : 전철명경과

직 위 : 정

성 명 : (인)



분류기호 문서번호		건경30050 67		기안용지 (전화: 391-6373)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건설행정과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 6 20		[Signature]			
보조 과 관		[Signature]		법 조 기 관		문 서 통 계	
기안책임자		경 동식				발 송 인	
경 유 수 신 함 조		법무감광판		발 신 명 의		건설행정과장	
계 목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					
공공도로의 무단점용 수용에 대한 호출적 재판을							
위해 별첨과 같이 "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부: 1.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제정경로 1부							
2. 조례 (안) 1부. 106							
3. 관련 법규. 4. 본 및 도로점용로점용조례각부							

작성
보
대
수
필
일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제정 검토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현행 도로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한자에게는 그 점유 기간에 대한 점유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80조의 2)
- 동법 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선 업무복주, 전과자 양산 우려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에게는 주로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유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 그 액수가 미미하여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공공도로의 무단 점유 사용을 근절시키므로써 도로본래의 기능을 회복, 유지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제재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2.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현행 도로법상에는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점유료 징수조례 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나 이와같은 경우 현행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별첨과같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령(안)

(조령 제 호 90. .)

제1조 (목적) 이 조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조령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무단점용 이라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 임의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거나 또는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등 도로 본래의 목적 (일반의 교통에 공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한자.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한자.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 행위를 한자.
4.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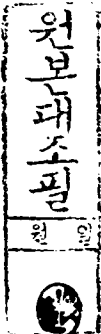
제4조 (권한의위임)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위임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 첨부 ;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안) 1부
2. 관련 법규 사본 각 1부 곁.
3.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1부



[별표]

도로부단점용자과면적부과기준표

무단점용면적	과액표 (원)	비고
1. 10m ² 미만	100,000	
2. 10m ² 이상 -15m ² 미만	150,000	
3. 15m ² 이상 -20m ² "	200,000	
4. 20m ² " -25m ² "	250,000	
5. 25m ² " -30m ² "	300,000	
6. 30m ² " -35m ² "	350,000	
7. 35m ² " -40m ² "	400,000	
8. 40m ² 이상	500,000	

원본
대소필
일

第39條의2 (不當利得金の徵收) 第40條의規定에 의한道路占用許可를받지 아니하고道路를占用한者에 대하여는 그占用期間에 대한占用料相當額을不當利得金으로徵收할수 있다. 이 경우에 그徵收方法은道路占用料徵收의예에의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89)

第9章 罰 則

第81條 (罰則) 正當한事由없이道路 高速國道를除外한다 損壞하여道路의效用을害하게하거나交通의危險을發生하게한者는10年以下의懲役또는50萬圓以下의罰金에處한다. <改正 66-8-3, 70-8-10>

第82條 (同前)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1年以下의懲役또는20萬圓以下의罰金에處한다. 改正 66-8-3, 68-12-31, 70-8-10

1. 第34條의規定에違反하여許可없이道路工事を施行한者
2. 不正한手段으로이法또는이法에依하여發하는命令에依한許可를받은者
3. 第36條의規定에違反하여許可없이通行料를徵收한者
4. 第40條의規定에違反하여許可없이道路를占用한者
5. 第47條의規定에違反한者
6. 正當한事由없이第49條의規定에依한管理廳의處분에抗拒하거나이를妨害한者
7. 第50條第4項(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項(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違反한者
8. 第51條第3項의規定에違反한者
9. 第54條의4第1項의規定에違反하여自動車專用道路에自動車를 사용하는이외의方法으로通行하거나出入한者
10. 第54條의4第3項의規定에 의한管理廳와命令에違反한者
11. 第54條의6第2項의規定에 의한 허가없이自動車專用道路에 道路 또는 交通用的私道·通路기타의施設을連結한者

第83條 (同前)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6月以下의懲役또는5萬圓以下의罰金에處한다. <改正 70-8-10>

1. 正當한事由없이第48條의規定에依한管理廳의處분이나行爲에抗拒하거나이를妨害한者
2. 第53條의規定에依한許可를받지 아니한限制속행의道路를通行한者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地方自治法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第2章 住民

第12條 (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안에 住所를 가진 者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第13條 (住民의 權利) ① 住民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에 依하여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稅課와 公費負擔을 負擔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受給하게 行政의 恩惠를 受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民인 住民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에 依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이하 "地方選舉"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第14條 (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에 依하여 그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負擔하는 義務를 가진다.

第3章 條例의 規則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의 範圍 안에서 그 事務에 關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關한 事項이나 罰則을 定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16條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律 또는 條例가 定한 範圍 안에서 그 事務에 關하는 事務에 關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7條 (條例의 制定의 法律程序)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郡의 條例나 規則에 依하여 制定하는 아니된다.

第18條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移轉, 變更의 條例의 制定의 法律程序) 地方自治團體가 新設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移轉 또는 變更에 關하여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執行할 때에는 該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該 地方自治團體에 關하여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執行할 때의 該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該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서 執行할 수 있다.

第19條 (條例의 制定의 法律程序) ① 條例가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該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를 受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該 條例를 受領한 때에 該 條例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限內에 이를 受領하여 地方議會로 送付하고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對하여 在席議員의 出席의 出席議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該 再議를 行한 則 該 條例案은 條例로서 行된다.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限內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該 條例案은 條例로서 行된다.

第2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條의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則 條例가 行한 후 또는 第4條에 의한 規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之種類
 2. 地方自治團體之組織
 3. 地方自治團體之權限
 4. 地方自治團體之經費
 5. 地方自治團體之監督
 6. 地方自治團體之責任
 7. 地方自治團體之廢止

第4章 選舉

第21條 (選舉權) 選舉日 前에 20歲 이상인 國民으로서 選舉日 前에 滿 25歲 이상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 住民資格이 있는 者은 該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의 選舉權을 가진다.

第22條 (被選舉權) ① 地方議會의 選舉權이 있는 者으로서 選舉日 前에 25歲 이상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 住民資格이 있는 者은 該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의 選舉權을 가진다.

② 地方議會의 選舉權이 있는 者으로서 選舉日 前에 30歲 이상인 者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長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35歲 이상인 者은 市·郡守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③ 地方議會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서 立候補하고자 하는 者은 選舉日 前에 該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 住民資格이 되어 있어야 한다.

第23條 (選舉管理委員會) 地方議會의 選舉事務는 選舉管理委員會에 의한 則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管理한다.

第24條 (地方議會에 關한 法律의 制定) 地方議會에 關하여 法律이 制定될 때에는 該 地方議會의 長이 該 地方議會의 長으로서 執行할 수 있다.

第5章 地方議會

第1節 組織

第25條 (會議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는 設한다.

第26條 - 第30條 第25-30條

第2節 地方議會의 職任

第31條 (議決의 權限) 地方議會會議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① 第1項의 任期는 議長에게 의한 前任議長의 任期를 滿 日의 다음날로부터 開始된다. 다만, 天災地變의 사유로 前任議長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議長을 選任한 때에는 그 任期日로부터 開始된다.

② 議長에게 의한 地方議會會議의 任期는 當選된 날로부터 開始되어 任期가 履行期滿으로 行한다.

4 增訂第31條에 依한 地方議會會議의 任期는 當選된 날로부터 開始되어 任期가 履行期滿으로 行한다. 地方議會會議의 任期를 開始할 때에 議長의 任期를 開始한다.

第32條 (議決의 權限) ① 地方議會會議은 議決할 수 있는 事項으로서 法律, 市·郡 規則, 市·郡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다만, 市議會는 會議중이 行하여, 地方議會會議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本會議이 議決한 則 議長의 任期가 履行期滿으로 行한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76. 4. 15 규칙제 1580 호
개정 1979. 2. 26 규칙제 1793 호
1982. 8. 9 규칙제 1990 호
1989. 2. 18 규칙제 2269 호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 라함)
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 3 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
청자" 라 한다) 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평면도 1부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1부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 (기간 갱신) 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 4 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 인이상의 신청이 경합



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에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면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1순위: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자

○ 제2순위: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정착물, 기타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용자

○ 제3순위: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할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9조 (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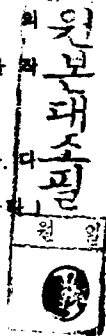
1. 기준표 제1항 제2항 제6항에 해당하는 점용

2. 기준표 제4항중 주유소, 승강대, 휴게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3. 기준표 제5항중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4. 기준표 제9항에 해당하는 전고한 고정시설물의 공간점용

5. 기준표 제10항중 육교등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과 주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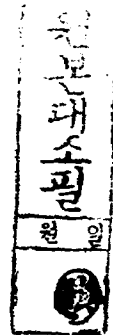
고정권 점용물건중 도로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점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무자택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년한
 2. 필요에 따라 시비부자택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년한
 3. 기타 공공사업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년한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처리한다.

제7조 (점용포시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년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주소 성명



제8조 삭제

제9조 (대리인) 신청자가 당시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구역내에 거주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선정하고 연서로써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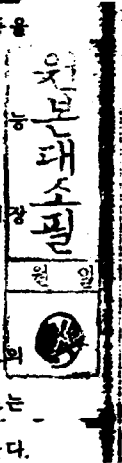
제 12 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3 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 4 조에 의한 "기타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시장이 이주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3. 기타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제 14 조 (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당 4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본 게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점용료의 불반환) 도로법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조치에 의하여 점용의 계속이 불가능하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정수한 점용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이의신청) 점용로 및 부당어득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 1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76. 4. 15 규칙제 1500 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로 정수에 관
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 2. 26 규칙제 1793 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
용로 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2. 8. 9 규칙제 1990 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18 규칙제 2269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